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7)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성남시의회
	제284회(임시회)

2023.07.17.(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검토사항》

- 조례안 8건
(제정 2건, 일부개정 6건)
- 민간위탁 동의안 7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염대석)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경위

- 제 출 자: 성남시장
- 의안번호: 제5184호

2. 제안이유

- 2023년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판교, 청솔)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주요 용도	현 위탁운영
1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분당구 운중로 254(판교동)	연면적 7,090㎡ (지하2층~지상5층)	어린이집, 프로그램실, 장애인·노인주간보호센터, 인지플랫폼카페, 헬스장, 강당, 사무실 등	사단법인 참사람들
2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분당구 미금로 246(금곡동)	연면적 3,169㎡ (지하1층~지상3층)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당,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강당, 사무실 등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

- 위탁개요

- 위탁기간: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사업
- 신청자격: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조금지원 외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

- 선정방법: 공개모집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기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 예산지원(예정)액: 1,947,891천원(시비 100%)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총계	1,947,891	
판교종합 사회복지관	1,020,074	
인건비	750,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31,852,250\text{원} \times 16\text{명} = 509,636\text{천원}$ • 제수당 $7,836,800\text{원} \times 16\text{명} = 125,389\text{천원}$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115,789천원
운영비	254,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비 및 수수료 47,963천원 • 공공요금 109,050천원 • 제세공과금 19,420천원 • 차량 유지관리비 9,18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68,647천원
사업비	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프로그램사업비 15,000천원
청솔종합 사회복지관	927,817	
인건비	81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35,983,260\text{원} \times 15\text{명} = 539,749\text{천원}$ • 제수당 $8,942,660\text{원} \times 15\text{명} = 134,140\text{천원}$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138,128천원
운영비	100,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비 및 수수료 23,316천원 • 공공요금 26,160천원 • 제세공과금 16,500천원 • 차량 유지관리비 7,2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27,624천원
사업비	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프로그램사업비 15,000천원

※ 연도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 향후 추진내역

- 수탁자 모집 공고: 2023년 8월 중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2023년 10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2023년 11월

5. 검토 의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4항¹⁾ 및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회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나. 민간위탁 대상여부 검토

-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²⁾ 제5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동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시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1.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 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2)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3. 8. 5. 제정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10개소(수정2, 중원3, 분당5), 민간위탁 5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3.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4. 교육문화사업: 아동·청소년 방과 후 교육, 성인기능 교실, 노인여가·문화, 문화복지 사업
5. 자활사업: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
6. 성남시장이 지역적 특색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2에 ‘시장의 소관 사무 중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복지 등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사항을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에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평가를 통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수탁업체 선정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2023년 6월 기준)

기관명	관장	주소	직원	시설규모	위탁법인	위탁기간	최초수탁일 (총위탁 횟수)	지원예산 (천원)
10개소	(위탁 8, 자체 2)		146					8,256,870
산성	이순규	수정남로306번길 15-16(산성동)	12	· 연면적 1,559㎡ · 지상4, 지하1	사 단 법 인 새 날 복 지 회	21.12.21. 26.12.20.	13.12.01. (3)	731,027
성남 위례	정헌채	위례광장로 311 (위례동)	13	· 연면적 1,166㎡ · 지상2	사 단 법 인 미 래 복 지 경 영	19.07.01. 24.06.30.	16.07.01. (2)	792,697
도촌	이종민	중원구 도촌북로 92(도촌동)	16	· 연면적 5,525㎡ · 지상4, 지하2	재단법인 여의도순 복 음 연 합	22.09.11. 27.09.10.	14.08.01. (3)	1,031,916
은행	박진영	산성대로518번길30 (은행동)	15	· 연면적 4,707㎡ · 지상5, 지하1	사회복지법인 굿패밀리복지재단	20.10.01. 25.09.30.	20.10.01. (1)	946,830
중탑	강일조	분당구 판교로 607 (아탑3동)	17	· 연면적 2,693㎡ · 지상3, 지하1	사 회 복 지 법 인 할렐루야복지재단	22.09.17. 27.09.16.	17.09.17. (2)	1,091,701
한솔	김도윤	분당구 내정로 94 (정지2동)	15	· 연면적 3,335㎡ · 지상3, 지하1	사 회 복 지 법 인 연 꽃 마 을	22.07.01. 27.06.30.	14.07.01. (3)	869,822
청솔	김재일	분당구 미금로 246 (금곡동)	15	· 연면적 3,169㎡ · 지상3, 지하1	사 회 복 지 법 인 대한불교천태종	18.12.06. 23.12.05.	12.12.06. (3)	927,817
판교	조희정	분당구 운중로 254 (판교동)	16	· 연면적 7,090㎡ · 지상5, 지하2	사 단 법 인 참 사 람 들	18.12.01. 23.11.30.	15.12.01. (2)	1,020,074
성남	전영순	중원구 금빛로 89 (금광2동)	13	· 연면적 2,726㎡ · 지상3, 지하1	사 회 복 지 법 인 월 드 비 전	법인소유 시설 (예산지원)	-	844,986
분당	김미경	분당구 정자일로 33(금곡동)	14	· 연면적 13,892㎡ · 지상5, 지하2	사 회 복 지 법 인 분 당 사 회 관	법인소유 시설 (자체운영)	-	미지원

- 수정구: 2개소(산성, 성남위례)
- 중원구: 3개소(도촌, 은행, 성남)
- 분당구: 5개소(중탑, 한솔, 청솔, 판교, 분당)

관계 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자선정)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일부개정 2017.3.29.>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본조제목개정 2020.2.2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20.2.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2.24.>

제7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본항개정 2020.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7, 2020.2.24.>

1. 해당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신설 2012.12.07, 일부개정 2020.2.24.>

2. 관계공무원<신설 2012.12.07, 일부개정 2020.2.24.>

3. 시의원 2명<신설 2012.12.07, 일부개정 2020.2.2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신설 2012.12.07, 일부개정 2020.2.24.>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07, 2020.2.2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07>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2.12.07., 2019.07.15.>